

## 한국에서의 환경책임 입법방안 에 관한 법적 검토

한 상 운\*

### 목 차

- I. 서론
  - II. 현행법상 환경피해구제 제도의 한계 및 개선방안
    - 1. 소송제도를 통한 환경피해구제의 한계
    - 2. 환경분쟁조정제도의 한계
    - 3. 개선방안: 환경책임법제의 도입
  - III. 환경책임법제의 내용
    - 1. 환경책임의 본질 및 유형
    - 2. 인과관계의 입증책임 완화의 문제
    - 3. 책임의 범위에 관한 문제
    - 4. 기타 입법시 검토 사항
  - VI.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 I. 서론

현재 우리나라의 환경피해에 대한 구제제도는 크게 공법적 구제와 사법적 구제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전자에는 행정쟁송과 환경분쟁조정제도, 후자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연구위원

에는 민사소송이 있지만 대부분의 환경피해구제는 민사소송에 의존하고 있다. 문제는 공사법적 구제를 불문하고 종래의 소송법이론으로 환경피해구제를 함에 있어서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핵심은 공사법상의 구제가 환경피해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피해구제 제도의 미비는 환경피해에 대한 책임의 불명확을 가중시키고, 환경피해구제의 불완전성을 초래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환경오염의 원인을 제공할 잠재적 가능성을 높이는 유인이 되고 있다. 환경오염에 따른 책임의 소재 및 책임한도의 명확성을 위해서는 다른 피해와 달리 환경오염에 따른 환경피해의 특성을 고려한 책임법제의 도입이 절실히 요구된다. 종래까지 환경책임법제의 입법적 미비에 대한 학계의 많은 비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도입에 대한 국가의 미온적 태도는 비판받아 마땅하며 하루속히 시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하에서는 환경피해의 구제를 위한 현행법상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서 환경책임법제의 도입 필요성 및 입법방안시 고려되어야 할<sup>1)</sup> 사항에 관하여 논하고자 한다.

## II. 현행법상 환경피해구제 제도의 한계 및 개선방안

우리나라는 1970년대 이후 경제성장 우선정책에 따라서 무분별한 국토 이용개발, 도시화정책 등으로 우리 실정법이 미처 예상하지 못한 환경오염의 피해가 격증하기 시작하였다. 지난 30여 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고속 경제성장을 이룩하여 2004년을 기준으로 세계 140여 국가 중 GDP로는 세계 11위, 무역액으로는 세계 13위이지만 환경생태계 지속가능성이라는 측면과 사회경제적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는 오히려 더 악화되었다.<sup>2)</sup> 환경

1) 이 논문은 2010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연구 수행중인 ‘환경책임과 환경피해보험제도의 제도화 방안’에 관한 연구“의 내용중 일부로서 강원대에 서 2010.8.31 개최된 한·독·일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충하였음을 밝힌다.

침해는 다른 법익침해와 달리 계속성, 광역성, 간접성, 지위의 비호환성, 가해자의 수익성 등의 특성이 있어,<sup>3)</sup> 개인주의적 시민법원리에 의한 사법적 해결로는 환경문제에 대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sup>4)</sup>

### 1. 소송제도를 통한 환경피해구제의 한계

일반적으로 환경문제는 소송당사자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으로 다수 국민의 이익과 결부되어 나타난다는 점에서 단체소송제도 등이 도입되지 않는 한 대립된 당사자의 법익 충돌을 해소하기 위한 현행 법원구조로는 불특정다수인이 관련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가 제도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또한 법원을 통한 피해구제는 종래의 소송법이론에 따르므로 그 피해구제에 있어서 일정한 한계가 존재한다.

#### (1) 민사소송에 의한 구제의 한계

먼저 민사소송에 따른 구제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환경침해에 대한 사법적 구제는 주지하다시피 유지청구와 민법 제750조 이하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제도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유지청구는 환경상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의 중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그 침해를 유발한 상대방에게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환경침해에 대한 사후적 구제로서의 손해배상청구는 불법행위법에 근거하고, 그 효과로서 민법 제750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실책임

2)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나라별 환경지속가능성지수(sustainability index)를 보면, 우리나라는 2002년 현재 세계 136위로 최하위권이다. 그리고 환경생태계 파괴로 식수의 오염도 20~40%, 서울의 대기오염도 세계 1위, 농약과 화학비료의 남용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국민의 환경오염에 따른 불안지수가 상대적으로 대단히 높다고 볼 수 있다.

3) 조홍식, 환경법소묘-환경법의 원리, p.336

4) 조만형, 환경행정 구제제도, 환경법연구 제26권 제4호, 286쪽.

주의에 따르며,<sup>5)</sup> 그 책임의 성립요건으로서 상대방의 고의나 과실,<sup>6)</sup> 위법성, 인과관계 입증 등이 요구된다. 이와 같은 요건의 엄격한 적용은 환경피해구제를 위하여 타당치 아니한 측면이 있어서 개별법이나 관례에 의하여 요건이 완화적용되고 있지만 환경침해에 따른 배상책임의 소재 불명확성이 근본적으로 해소되기 어렵고, 또한 피해구제도 불완전하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환경소송의 승패를 가르게 될 입증의 문제는 환경피해자에게 법원구제를 어렵게 하는 결정적 요소다. 피고 가해기업에서 오염물질이 배출되었다는 사실과, 그 오염물질이 원고 피해자들에게 도달해서 건강이나 재산상의 피해 또는 정신적 고통을 입혔다는 사실을 증거를 통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오염배출원을 밝혀야 하는데, 공단에 입주해 있는 수많은 기업들이 제각기 어떤 오염물질을 얼마나 배출하는지를 알아내야 하지만 관련된 자료와 정보가 부족한 피해 주민들 입장에서는 배출원을 밝히는 것 자체도 어려운 과제다.

더구나 원고 주민들의 피해가 피고 기업 등의 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것임을 밝혀야 하는, 이른바 인과관계입증의 문제는 대부분의 환경소송에서 가장 문제가 많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있다.<sup>7)</sup>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원고들의 입증책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시도가 관례와 학설을 통하여 제

5) 대법원 1984. 6. 12. 선고 81다558 판결; 대법원 1991. 7. 23. 선고 89다카1275 판결 등.

6) 과실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손해발생에 관하여 예견가능성이 있으면 조정·정지 등을 통하여 손해회피조치를 취함으로써 손해발생을 방지할 수 있다는 예견가능성설이 관례입장이다. 대법원 1973. 10. 10. 선고 73다1253 판결.

7) 예를 들면, 대기오염피해 소송에서 피고인 회사는 “대기오염물질은 공기 중에 흩어지는 것인데도 자동차배기가스 또는 공장매연이 피해주민들 거주지역의 심각한 대기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는가, 호흡기 질환은 대기오염뿐만 아니라 알레르기나 흡연 따위의 다른 원인 때문에도 발병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데 대기오염이 자동차매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가”라는 항변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인 원고 입장에서는 이 원인들을 규명할 능력이 없어 소송의 부담이 극대화되어 소송에 따른 구제를 포기하게 하는 결정적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시되어 있다. 즉, “가해기업이 어떤 유해한 원인물질을 배출하고 그것이 피해자에게 도달하여 손해가 발생했다면, 가해자 측에서 그것이 무해하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사회형평의 관념에 적합하다.”는 대법원 판례<sup>8)</sup>나 “피해자가 오염물질배출과 피해 사이의 개연성을 입증하기만 하면 되고, 그에 대해 가해자가 오히려 인과관계가 없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는 개연성이론은 나름대로 원고의 입증책임을 완화 또는 (결과적으로) 입증책임의 전환을 불러온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법원의 이러한 입장은 입법으로 명문화되지 않아서 구체적 소송에서 인과관계에 관한 소극적인 판결도 나올 수 있다는 점은 원고인 피해자 입장에서 소송의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는 딜레마에 빠지게 하여 소송구제를 포기하게 되는, 그래서 부당한 환경피해를 감수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1996년에 인천 남동구 주민들이 제기한 ‘고잔동 유리섬유 피해 사건’은 대표적인 사례다. 재판에서는 유리섬유생산업체가 주민들의 거주지 인근에 폐유리섬유를 불법으로 폐기하고 야적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공장 부근에서 지하수를 먹고 생활하던 주민들이 암, 호흡기질환, 피부병 등의 질병에 걸린 사실도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3년여에 걸친 재판에서 여러 전문기관의 역학조사결과가 서로 엇갈리면서 1심 지방법원 판결은 유리섬유에 따른 지하수 오염과 피해주민들의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하였다.<sup>9)</sup>

그 다음 단계로 인과관계 입증의 어려움을 극복하더라도 환경오염 피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피해가 위법해야 하는데 이것은 수인한도, 즉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수인한도의 기준은 불명확하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법원의 판결에서는 흔히 ‘침해되는 이익의 종류와 정도, 침해행위의 공공성, 그 지역의 토지이용상황, 공법적 규제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인한도를 정한다고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환경 이익이 경제논리의 뒷

8) 대법원 2002.10.22. 2000다65666 판결.

9) 인천지방법원 1999.8.18. 96가합8303 판결.

전에 떠밀려 있고, 환경피해가 그다지 심각한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는 법원 판결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수인한도의 기준을 상향해서 판단하고 있다. 예를 들어, 환경권에 관한 기본법이라 할 「환경정책기본법」은 소음에 관한 환경기준을 지역과 시간대에 따라 40dB~75dB 까지 다르게 정하고 있다(동기본법 시행령 제2조·별표1 참고). 그렇지만 40~60dB의 환경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의 소음피해에 대해서도 법원은 수인한도를 그보다 훨씬 느슨한 행정상 단속기준인 65~70dB로 놓고 판결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현실적으로 수인한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법원이 그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보편 이와 같은 입법이나 판례경향은 국민에게 부당한 환경피해를 감수하도록 강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민사소송의 직접적 목적은 환경피해에 따른 피해배상인데 어렵사리 소송을 제기해서 복잡한 입증을 거쳐 환경피해의 배상책임이 인정된 경우에도, 그 배상액은 대개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위에서 언급한 고잔동 유리섬유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가 인정된 주민들에 한정하여 암과 호흡기질환 따위의 모진 병에 걸려 오랜 기간 고통받아 온 주민들이 받은 배상금액을 기껏해야 1인당 100~300만 원이라고 판시하였다. 이것은 피고공장에 가장 근접한 6가구 주민들로서 10년 이상 거주한 자, 위의 주민 중 10년 미만 거주한 자와 그 나머지 구역의 주민들로서 10년 이상 거주한 자, 그 이외의 자로 구분하여 각 손해배상액을 차등지급하도록 판시한 것이다. 또한 무려 반세기 동안 폭격기의 굉음에 시달려 난청을 앓고 목숨을 위협당해 왔던 매향리 주민들이 받은 배상금도 한 사람당 1,000만 원 수준이다.<sup>10)</sup> 또한 최근의 법원판례에 의하면 10년 가까이 계속해서 65~78dB 정도의 도로소음으로 고통받아 온 주민들에 대하여 배상액 20~30만 원을 인정하는 등 다른 사건과 달리 환경피해에 따른 위자료 액수는 지나치게 낮게 판결을 내고 있다.

<sup>10)</sup>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2다14242 판결; 서울중앙지법 2006.4.25. 선고 2001가합48625 판결 참조.

그리고 인과관계의 입증 등 불확실한 자연과학적 지식에 근거한 입증을 위해서 비용이 과도하게 소요되고, 더구나 공공재로서의 환경침해에 대해서는 개별적 피해의 정도를 확정하기가 더욱 어렵다. 이런 이유로 소송자체의 비합리성이 강하게 부각되어 결국 사법규제의 적정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sup>11)</sup> 현행「민법」의 해석상 사인 간의 환경침해에 관하여 앞에서 살펴본 내용에 따르면 환경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은 유지청구나 손해배상청구가 전부다. 그러나 유지청구나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요건과 관련하여 고의·과실의 문제, 위법성의 문제, 인과관계의 문제에서 보듯이 종래의 권리침해이론을 바탕으로 이와 성격이 전혀 다른 환경침해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 (2) 행정소송에 의한 구제의 한계

환경피해나 생태계 파괴를 예방하기 위해 리조트나 골프장, 도로 따위의 개발 사업에 대한 인·허가를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에서도 제3자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이나 처분성에 관한 문제, 그리고 이행소송과 예방적 부작위청구, 집단소송과 주민소송의 문제 등과 관련하여 환경피해에 대한 적절한 구제수단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 우리 법원은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만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고, 법이 규정한 처분 등 또는 부작위에 한정하여 제3자까지 직접적·구체적 손해가 있을 때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법원은 원고적격성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인근주민의 환경소송 자체를 차단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해당 사례로서, 지난 2000년 리조트개발업체의 제주도 송악산 개발을 저지하려 환경단체와 인근지역 주민들이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환경단체와 주민에 대해“개발지역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도 않고 개발사업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익을 침해당하는 것도 아니하였다”라는 이유로 소송을 각하하였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이에 대하여 학설과 판례입장

<sup>11)</sup> Huber, *Safety and the Second Best*, Columbia L. Rev. Vol. 85, 1985, p. 277 이하 참조.

은 환경문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나름대로 전향적 이론을 제시하고 있지만 환경피해구제에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다. 환경 행정소송에서도 이와 같은 원고적격의 문제 외에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입증의 문제는 여전히 피해자 입장에서 소송의 수행을 어렵게 만드는 원인인 것이다.

## 2. 환경분쟁조정제도의 한계

법원 소송에 따른 구제와 달리 환경분쟁조정제도와 관련해서 그 문제점을 살펴보면, 조정제도는 강제적인 절차가 아닌 당사자 간의 합의에 기초하여 분쟁을 해결하고자 도입된 제도이나, 현실적으로 조정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재판절차를 통하여 조정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는 것이다. 결정에 대한 불복원인을 살펴보면, 첫째 당사자 간의 분쟁사건과 관련된 인식 차이가 크다는 점이다. 둘째, 가해자가 주로 기업의 측면에서 불복요인이 생긴다. 즉, 가해자인 기업이 공해기업이라는 사회적 비난을 면하기 위하여 불복하는 경우가 생긴다. 사업자 측에서는 조정결정에 내심 승복하는 경우에서도 시간을 벌거나 대외적 명분을 찾기 위해 일단 불복 후 당사자끼리 암암리에 합의하는 경우가 있다. 셋째, 양 당사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배상액의 수준을 결정하기 곤란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피해자의 경우는 배상결정액수에 대한 불만 및 인과관계가 없다는 결정에 대한 불만이며, 가해자의 경우는 배상결정액수 과다주장 및 배상책임이 자기에게 없다는 주장이다.

물론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조정 수용률은 90%를 상회하지만 분쟁조정제도 자체에 대한 불만이 없는 것은 아니다. 여론조사<sup>12)</sup>에서 가장 불만족스러운 부분으로 배상수준이 매우 낮다는 점(64%), 분쟁조정대상이 한정되어 있다는 점(45%) 등의 순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환경분쟁조정제도를 활용하는 사례가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주로 소음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대다수 비

12)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월드리서치). 2006. 7 「환경분쟁조정제도 활성화 관련여론조사」, p.50

율을 차지(약86%)하고 있으며, 전통적인 환경오염에 따른 환경분쟁은 여전히 사법구제에 의존하고 있다. 더구나 행정구제로서 한계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가해자가 합의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사법구제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입법적으로 환경피해에 따른 구제강화를 위한 법적 개선이 요청된다.

### 3. 개선방안: 환경책임법제의 도입

#### (1) 도입필요성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우리의 현행 환경피해구제 제도의 문제점들은 환경피해에 대한 법적 구제의 어려움을 의미하며, 그 근본적인 이유는 현행법제도상 환경피해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민사상의 불법행위에 따른 피해구제와 동일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법적 구제의 어려움은 환경피해에 따른 분쟁의 심화를 초래하여 사회적 문제로 이슈화되거나, 더 나아가 피해주민과 환경단체들이 여론에 기대어 환경문제를 정치 문제화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행위는 기업 등 가해기업에 대한 압박수단을 넘어 사회적 갈등을 확대 재편하는 방향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련의 피해구제와 관련된 제도적 미비는 그 결과의 불확실성으로 피해주민뿐만 아니라 국민일반에 대하여 환경피해의 사법구제를 회피할 가능성을 높이는 이유가 될 수 있다. 또한 그 역으로 환경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 측의 입장에서도 환경피해에 대한 책임의식을 약화시켜 오염물질에 대한 무단 배출 및 폐기 등의 법위반 행태로 나아갈 가능성을 열어 주고 있다.

그러나 무과실 책임과 인과관계의 추정 및 엄격한 배상책임액 산정 등에 관하여 명시적인 조항을 두는 환경책임법제의 도입은 실질적인 피해구제 측면(적절한 배상보장 기능<sup>13)</sup>)뿐만 아니라 기업입장에서도 환경책

13) 환경책임법도 책임법의 성격을 가지므로 책임부담을 하여야 할 자로 하여금 적절하게 피해배상을 하도록 보장하는 기능을 갖는다.

임을 부담하는 경우를 고려하여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를 보다 체계적으로 내부화하도록 유인하여 경비 절감을 위한 환경경영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환경자원의 합리적 배분기능). 현행「환경정책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무과실책임원칙과 환경오염피해 분쟁제도는 초래된 환경손해에 대해 법적 장치에 따른 실질적인 배상책임이 존재하지 않아서 가해자인 오염자의 사전 예방적 조치 및 발생된 손해에 대한 사후배상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sup>14)</sup>

또한 기업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데 경제적 측면에만 치중하던 우리 기업들의 시각과 관행을 일부나마 교정시키게 된 계기는 아이러니컬하게도 IMF 외환위기 이후 급증한 기업의 인수·합병 협상 때였다.<sup>15)</sup> 당시 외국의 매수기업들은 국내기업 소유 공장부지의 환경오염에 따른 잠재적 책임의 가능성 때문에 높은 수준의 환경실사를 요구하였고, 그 결과 환경적 측면을 기업경영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던 국내기업들이 매각과정에서 재정적 손실을 보는 뼈아픈 경험을 했던 것이다. 그 이후 기업의 환경책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예전보다 제고된 것도 사실이지만 이에 대한 입법의 태도는 여전히 소극적으로 일관되어 왔다. 물론 부분적으로「토양환경보전법」등 개별 환경법규의 책임관련 조항들이 일부 정비되었지만 전반적으로 환경피해의 특성을 반영하는 환경책임법제의 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 (2) 입법형식

개별입법으로서 환경책임법제의 도입(제1안)이 다수의 법률 양산을 지양한다는 관점에서 기존의「환경정책기본법」에 책임조항과 관련한 별도의 장을 마련하는 것을 하나의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으며(제2안), 또

14) 홍준형, 환경법(제2판), 박영사, 2005, p.369

15) 이재협, “기업구조조정 및 M&A 과정에서의 환경문제와 법적 대응”, 「국제법무연구」 3(1), 1999; 황창식, “기업의 인수·합병과 토양오염”, 「환경문제연구총서(IX): 환경에 관한 원칙, 제도 및 입법론」, 2001.

는「토양환경보전법」등 개별 환경법상에 환경책임조항을 삽입하는 형식(제3안)을 고려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개별 환경법들 간의 관계를 정립하고,「환경정책기본법」제31조 제1항의 실제적 효력의 인정 여부를 둘러싼 지속적인 논란 가능성과 다른 선언적 규정과의 부조화, 그리고 “사업장 등”“사업자”“환경피해” 등 개념 정의와 세부적인 내용의 추가 등의 법기술적인 문제, 궁극적으로는 피해자의 권리보호에 충실하기 위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별도의 단일법으로 환경책임체계를 일원화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제1안).<sup>16)</sup> 다만, 원자력손해, 유류오염에 따른 피해는 그 규제 및 피해구제에 대한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별개의 책임법제로 종전과 마찬가지로 존속시키더라도 토양오염은 일반적 환경피해에 포함시켜 통일적 규율의 대상으로 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 III. 환경책임법제의 내용

환경피해의 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개별적 환경책임법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법제도설계의 근간이 되는 쟁점들에 관하여 법이론상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즉 환경책임의 개념 및 본질(과실책임과 위험책임), 그리고 책임의 유형(행위책임과 시설책임)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지의 문제, 책임의 범위(보호법익)에 관한 문제, 환경법 및 환경행정법과의 법체계상 지위에 관한 문제, 적용대상(시설 등) 범위의 문제, 그리고 책임의 요건으로서 주관적 요건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피해 발생(특히 피해의 범위설정문제)·위법성·인관관계의 입증 등 책임의 성립요건에 관한 문제, 이외에도 보험 등 책임이행을 위한 수단 확보의 문제, 피해구제와 관련하여 구제의 효율성을 위한 집단소송제도 등의

<sup>16)</sup> 이와 같은 견해로서 유지태, 환경책임법 입법론, 공법연구 제20집, 2005, p.296; 김홍균, 환경법상의 환경책임제도, 법조, 법조협회, 2001. 1, p.65 이외에 조일환, 환경권보호의 사법적 실효화를 위한 환경책임법 제정의 필요성, 인권과 정의, 1993; 오석락, 환경책임법 시안, 환경법연구 제15권, 환경법학회, 1993 등.

도입문제 및 피해액의 적정성 확보의 문제 등 환경책임을 법제화하는 경우 반드시 검토를 해야만 하는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더구나 이들 문제들은 개별적으로 분립된 문제가 아니라 서로 밀접한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입법과정에서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다만 이하에서는 위의 사항들에 관하여 논의전개의 필요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간략히 검토해 보고자 한다.

## 1. 환경책임의 본질 및 유형

- 위험책임 v. 과실책임

- 위험책임=시설책임+행위책임 v.

위험책임(→시설책임)+과실책임(→행위책임)

### (1) 책임의 본질

환경책임의 본질에 관한 기존의 논의는 특정인의 위법한 행위에 대한 과실책임과 특정인의 위험지배 그 자체에 대한 위험책임으로 구분하여 논의되고 있으며, 이와 구별하여 책임의 유형론은 책임의 원인에 따라 행위책임론과 시설책임론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환경책임의 본질론에 관하여 살펴보면 환경책임은 사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으로 인식되었으며, 이 경우 환경침해 등에 대한 고의·과실이라는 주관적 요건에서 출발하여 과실, 즉 주의의무위반을 그 책임의 본질로 보고, 손해발생에 관하여 예견가능성을 과실의 중심내용으로 이해하는 것이 종래까지 우리 대법원 관례입장이다.<sup>17)</sup> 그러나 환경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실책임(Verschuldenshaftung)으로 보는 종래의 입장은 오늘날 환경피해의 복잡·다양한 특성을 고려할 때 책임구현 및 환경보호에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 이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현행법제는 환경정책기본법과 일부 개별법에 무과실책임조항을 두어 이

<sup>17)</sup> 대법원 1973. 10. 10. 선고 73다1253 판결.

를 해소하고자 하고 있으나, 그 한계가 여전히 상존하고 있음을 이미 살펴 보았다.

이에 반하여 대부분의 개별적 환경책임법제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위험책임(Gefährdungshaftung)을 입법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주류를 이룬다.<sup>18)</sup> 즉 시설운영 주체의 과실을 요구하지 않고 손해의 발생이라는 결과 자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지우는 위험책임이 보다 환경책임으로서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고 본다.<sup>19)</sup>

그 이유로서는 첫째, 위험책임은 특정의 기계설비나 시설의 유용성으로 인하여 감수될 위험(Risiko)을 인간의 기술적 통제의 불완전성에 따른 피해발생의 경우(이 경우에 인간의 과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에도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우도록 한다는 점에서 오늘날 환경피해에 대한 책임구현에 유리하다. 둘째, 각종 위험원에 대한 위험책임의 요건을 개별법에 마련하는 경우에도 급속도로 변화·발전하는 과학기술로 인하여 입법의 흠결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일반법으로서의 환경책임법에 이를 규정하는 것이 입법론적으로 적절하다.<sup>20)</sup> 셋째, 위험책임법리에 따라 위법성이 책임요건으로서 요구되지 아니하며(이 점에서 무과실책임과 구별됨), 인과관계의 입증도 보다 완화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책임법으로서의 적절한 배상책임기능을 확보할 수 있다. 넷째, 사후구제수단으로서의 환경책임법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보완적) 사전예방기능을 보다 더 강화할 수 있다.

독일의 경우에도 1991년 시행되고 있는 환경책임법(UmweltHG)에서 위와 같은 환경위험책임을 종래의 무과실책임과 구별하여 책임의 본질로 수용하고 책임법의 기본원칙으로 삼고 있다.

18) 전재경, 환경책임법제 연구, 법제연구원, p.31; 유지태, Ibid., p.297-302; 김세규, 환경위험책임에 관한 연구, 공법학연구 제6권 제2호, p.313-333.

19) 유지태, Ibid., p.298.

20) 김형배, “위험책임:불법행위법 개정안의견서”, 민사법학 제15호, 한국사법행정학회, p.179.

### (2) 책임의 유형

이와 달리 환경책임의 유형에 관한 논의는 종래의 불법행위책임이 인간의 행위책임을 전제로 과실책임으로 연계되어 전개되어 온 전통적 법이론과 구별하여, 오늘날 환경피해의 특성(특히 환경피해발생 원인과 관련하여)을 고려하여 환경책임이 특정인의 행위가 아니라 시설자체에서 기인할 수 있다는 경험적 측면에서 시설책임론이 제기되었다고 볼 수 있다. 독일 환경책임법에서는 환경책임은 오로지 일정한 시설에 의해서만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그러나 독일 수법(WHG) 및 원자력법(AtomG)에서는 행위책임 내지 물질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시설책임은 과실책임 보다도 위험책임과 연계되어 나타나기 쉬운데, 그 이유는 매우 다양한 위험을 책임법상 열거하여 규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그 방안으로서 특정시설에 한정하여 위험책임을 부담케 하는 것이다.

### (3) 결어

이와 관련하여 한국에서 환경책임법을 입법으로 제시할 경우 몇 가지 문제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먼저, 시설책임이든 행위책임이든 이를 위험책임으로 보고, 동일하게 규정할 것(제1안: 일원론적 입법-행위책임도 이에 포함시킬지 여부의 문제), 둘째, 행위책임을 위험책임과 분리하여 규정할 경우(이원론적 입법), 시설책임으로서의 위험책임과 달리 행위책임을 본질을 종래와 마찬가지로 과실책임으로 보되, 환경책임법상 행위책임의 요건으로서 무과실책임 및 위법성과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규정을 두는 방안(제2안)이 검토될 수 있다.

제1안의 행위책임을 위험책임에 포함시키는 방안에 관해서는 구성요건을 형해화 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으며, 이 입장에서는 위험책임은 특별한 위험, 즉 손해를 발생시키는 위험형태가 특히 크고 비일상적일 때 인정된다는 위험책임의 본질에 비추어 시설책임에 한정해야 한다고 본다. 독일의 환경책임법에서도 환경책임을 시설책임으로서 위험책임에 한

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행위책임을 일률적으로 위험책임에서 배제하는 부분은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환경책임법상 행위책임을 위험책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특정의 오염물질 배출행위(하천이나 토양, 대기중에 환경위험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는 예외적 조항을 두어 위험책임을 인정하는 것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

위험책임으로서 시설책임을 인정하는 경우에 적용대상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실무상 대단히 예민한 문제이다. 즉 시설책임으로서의 위험책임을 부담케하는 경우 그 범위 설정과 관련하여 환경위해시설 일반으로 규정할 것인지(제1안), 아니면 특정시설을 열거하여 책임대상시설로 정할 것인지(제2안)가 문제이다. 환경책임법제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고려할 경우 전자의 일반적 규정보다는 후자인 열거적 규정이 선호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는 실무상 침해한 이익에 대답하는 문제이지만, 행정허가 대상 시설 가운데 일정 규모의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산업시설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독일도 환경책임법 제1조에 근거한 부록별표에서 대상시설을 명기하고 있다. 별표에 의하면 발전소, 제철·제강시설, 화학공업시설, 폐기물 등 96종의 시설을 유형화하고, 다시 이를 세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 2. 인과관계의 입증책임 완화의 문제

- 개연성이론 v. 인과관계의 추정 -
- 입증책임의 범위 한정 문제 -

위험책임원칙에 따라 환경책임의 성립요건으로서 과실과 위법성이 요구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인과관계의 입증이 없으면 환경책임을 논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즉 환경피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환경위해시설(또는 행위)의 존재 및 그 시설(또는 행위)의 구체적 유해효과를 입증하여야 한다. 특히 환경손해의 발생은 다수의 원인에 의하여 중첩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는데, 이 경우 어느 시설의 어떤 행위에 의하여 손해

가 발생하였는지 밝혀야 한다. 그리고 특정의 시설 및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시설이나 다른 행위에 의하여 유사 손해가 이미 발생한 바 있는지, 기타의 다른 원인이 누적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는지, 누적된 원인제공에 의한 손해인 경우 각각의 원인제공행위에 대한 개별적 기여의 정도를 구분할 수 있는지, 피해에 대한 책임의 분배도 가능한지 등의 입증책임을 피해자는 부담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입증은 다른 분야와 달리 자연과학적 고도의 지식 및 경험을 필요로 하며, 따라서 환경책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입증문제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대안으로서 먼저, 입증책임의 부담을 완화하여 개연성을 인정하려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영미법계에서 주로 이용되는 방안이고, 이와 달리 충분히 인정되는 특정사실로부터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방안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입증책임의 전환<sup>21)</sup>이라는 효과를 발생시킨다.

전자의 방법은 종래의 우리 대법원 판례로서 인정되고 과개연성이론을 입법화하지는 의견으로서 이 견해에 의하면 환경소송에서 인과관계의 증명은 과학적으로 엄밀한 증명을 요하지 않고 침해행위와 손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상당한 정도의 가능성이 있다는 입증 함으로써 족하고, 가해자인 피고는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반증한 경우에만 책임을 면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법관의 소송절차상의 자유심증주의에 비추어 입증책임을 과도하게 경감한다는 점, 가해자인 피고에 대한 혐의책임(Verdachtshaftung)이 강하게 나타난다는 점 등에서 비판이 있다.

후자의 인과관계의 추정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있다. 즉 후자의 방안에서 입증책임의 전환은 배상책임법체계의 본질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시설운영자의 입증책임 부담에 따라 단순 의심만으로

21) 독일 환경책임법 제6조에서는 운영자는 시설이 규정에 따라 가동되었음을 입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독일민법 제823조 제2항의 규정과 반대로 입증책임의 전환을 의미한다.

도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한국의 실정에서도 학설과 판례에 의존하지 않고 환경피해자 측의 입증책임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개연성이론이 한국에서 통설과 판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점에서 도입방안으로 우선 검토될 필요가 있다. 이와 달리 독일은 법정 산업설비로부터 야기된 환경피해에 대해서는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그 인과관계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설비의 운영자가 그것을 입증하도록 하는 인과관계의 추정을 규정하고 있다. 즉 독일 환경책임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는 인과관계 입증에 있어서 일정한 시설에 의하여 법익침해가 야기된 경우 시설의 운영이 개개의 경우를 합한 전체의 계획에 근거하여 법익침해가 발생된 경우에는 인과관계는 이미 추정된다는 것이다. 물론 이때에 개별적인 사건에 있어서의 적합성은 시설운영의 경과, 이용된 설비, 투입된 물질의 종류와 농도, 기상상태, 손해발생의 시간과 장소, 손해형성의 기타 표지 등 모든 기타의 사정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인과관계의 추정을 법제도적으로 도입하는 경우에 반드시 고려해야 될 사항으로 시설운영자 입장을 고려하여 일정한 경우 인과관계의 추정이 배제될 수 있어야 한다. 즉 시설 운영자(Betreiber)는 시설가동이 특별한 행정법상의 운영의무에 위배되지 아니하며, 여하한 운영장해(Betriebsstörung)도 발생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경우(독일 환경책임법 제6조 제2항·제3항)와 시설운영자가 해당시설의 가동이외의 다른 사정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되었음을 입증한 때에는 인과관계의 추정이 배제된다.

핵심적 문제는 인과관계의 추정을 통하여 입증책임을 완화하더라도 피해자의 입증사실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이다(원고와 피고간의 이익조절의 문제). 예를 들면 A안 (= 손해 발생사실 + 손해가 시설가동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 때문이라는 사실 + 지리적 근접 사실), B안 (= A안 + 구체적으로 사실, 예: 문제시설의 가동과정, 사용설비, 투입·배출물질의 종류와 양, 기상조건, 손해발생 시간·장소 등) 등이 제시될 수 있다.

이와 달리 피해자들의 증거수집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관련 정보청구권이 당해 시설운영권자나 국가에 대하여 인정되어야 한다. 독일은 환경책임법 제8조에서 피해자는 시설운영자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설명청구권), 설명이 행하여지지 않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관련서류에 관한 열람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다. 다만 시설에 대한 인가권자나 감독기관에 대한 설명청구권은 인정하고 있지만 열람청구권은 수용하고 있지 않다.

더 나아가 소송법제상 증거개시제도(discovery)의 도입도 차제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미국에서는 「소송법」의 법정 외의 증언(deposition), 질문서의 교환(interrogatories), 문서열람조사(discovery of document) 등을 통해 정보소지자에게 그의 수중에 있는 관련 정보를 강제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증거개시제의 도입을 바탕으로 환경피해에 대해 입증책임이 있는 피해자가 증명할 사실을 정확히 특정해서 주장하지 않고 증거조사를 통해 앞으로 주장할 기초자료를 얻어내는 모색적 입증의 허용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중국에서도 「민사소송증거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을 개정하여 “환경오염으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의 경우 가해자는 법률규정의 면책사유 및 그 행위와 발생한 손해 간에 인과관계가 없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는 규정을 두어 환경오염에 따른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가해자인 피고 기업 등으로 하여금 반대입증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 3. 책임의 범위에 관한 문제

- 생태계 보호의 문제-
- 공동원인에 기인한 배상책임의 문제 -
- 합법적인 정상가동으로 인한 피해 발생시 배상책임의 문제 -

#### (1) 생태계 보호의 문제

환경책임법상 논의되는 보호대상은 생명, 신체, 건강 및 물건이며, 이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재산상 손해가 발생된 경우에 가해자로 하여금 위험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생태계를 포함시킬지 여부가 문제이다. 생태적 손해는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규명되지 않은 완전히 새로운 손해로서 인과관계나 피해입증가능여부를 떠나 이를 환경책임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환경책임법의 법적 성격과 관련되어 논의될 필요가 있다.

즉 환경책임법의 법적 성격을 개인간의 사적 이익의 조절이라는 관점으로 한정하여 이해한다면, 자연생태공간의 기능확보라는 공적 이익을 위한 생태계를 그 보호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법체계상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있다(제1안). 이와 달리 환경책임법을 사적 이익의 조절 차원을 넘어 환경이라는 공공재를 보호한다는 공적 이익을 위한 조절법으로 이해한다면 생태계를 포함한 자연환경도 보호대상으로 포섭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 경우 그 피해배상은 사적인 이익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과 별개로 가능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제2안).

환경책임법의 법적 성격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환경정책기본법과의 관계를 고려할 필요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환경정책기본법에 환경책임법의 근거 조항을 두되, 환경책임에 관한 일반법으로의 법적 성격 및 체계상의 지위가 드러나도록 규정하는 것도 검토할 만하다(제1안). 이와 달리 환경정책기본법에 환경책임법의 근거조항만 규정하고, 환경책임법의 목적 조항에 법적 지위 및 체계에 관하여 규정할 수도 있다(제2안).

## (2) 공동원인에 기인한 배상책임의 문제

환경피해는 장소적 광범성과 장기간의 시간성 및 반복성을 특징으로 한다. 따라서 환경책임법을 입법함에 있어서 일반불법행위와 다른, 환경피해의 격지성 및 누적성, 그리고 오염원의 다수성에 따라 개별적 인과관계의 입증이 불가능하거나, 다수의 공동원인간의 피해의 기여분을 정할 수 없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대배상책임제도의 도입이 필수적이다. 우리 학설과 판례도 이 경우에 민사소송법 제287조를 적용하여 피해자의 입증의 어려움을 고려하고, 부담부분 불명의 경우에는 민법 제830조

제1항 제2문을 유추적용하여 모두가 연대책임을 진다고 본다.

문제는 전체손해에 대한 기여가 상대적으로 작은 원인자에게도 연대하여 전체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경우가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원인제공자의 손해발생에의 기여도가 분명한 경우에는 이를 가해자가 입증하도록 하고, 그 배상도 기여의 정도에 따른 비율로 정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다만 기여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전부 책임을 부담하게 하되, 개별시설이 야기할 위험의 총한도를 설정하는 것도 검토할 만하다. 그리고 격지성과 장기간에 누적된 환경피해에 대한 배상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로서 기금등 배상체계를 갖추는 것도 중요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

### (3) 합법적인 정상가동으로 인한 피해 발생시 배상책임의 문제

위험책임을 환경책임의 본질로 이해하는 입장에서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 위험책임에 포함시킬지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다. 첫째, 시설의 정상가동으로 인한 환경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둘째, 합법적으로 허가를 받아 가동하는 시설로 인한 피해의 경우에 각각 위험책임을 부담하도록 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이다.

전자는 정상가동을 포함시키는 경우에는 비례성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손해의 정당한 조정이라는 관점에서 제외하자는 견해(제1안)와 위험책임은 허용된 위험에 대한 책임이므로 포함되어야 한다는 견해(제2안)가 대립한다.

후자는 행정법상의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지만 특정시설에 대한 공법상의 허가로 인하여 시설가동에 따른 외부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법적 신뢰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 경우에 위험책임을 지우더라도 행정법상의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다.<sup>22)</sup>

적법한 정상적인 시설가동의 경우에는 위험책임을 부과해서는 안된다

<sup>22)</sup> 유지태, Ibid., p.300-301.

는 위의 논의와 관련하여 독일은 위험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고 보고, 다만 입증책임과 관련하여 원인추정을 배제하는 타협책을 환경책임법(제6조)에 수용한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환경책임법 제정시 위험책임은 불가항력에 의한 피해인 경우에는 책임의 범위에서 제외되지만 시설의 장애운영으로 인한 손해는 물론이고 적법한 정상운영으로 인한 손해와 개발위험으로 인한 손해 등은 책임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정상가동인 경우에는 입증책임의 완화가 배제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회적으로 수인가능한 경미한 침해에 대하여는 책임자체가 배제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4. 기타 입법시 검토 사항

환경책임법은 각종 환경행정법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상호보완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위험책임의 적용대상인 시설을 확정하기 위해서 환경행정법상의 허가를 요하는 대상인 시설과 연계하는 것도 그 예가 될 수 있다.

이외에 환경책임법 입법방안을 고려할 때 다음의 사항이 검토사항으로서 요구된다.

- 배상책임의 최고한도 설정
- 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보험 등 책임이행을 위한 수단 확보의 문제,
- 피해구제와 관련하여 구제의 효율성을 위한 집단소송제도 등의 도입 및 피해액의 적정성 확보의 문제 등

## VI. 결론

각국에서 환경보호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여 이를 집행하는 것은 환경관리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종래까지 환경오염이 발생해도 그 법적 책임을 민사상의 불법행위에 따른 책임으로 보아 이를 가해자와 피해자 양 당사자의 문제로 국한하는 원칙적 입장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으로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하다고 본다. 현대국가는 환경피해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환경피해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함으로써, 환경보호라는 시대적 사명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도 환경침해에 대하여 방관자 입장이 아니라 적극적 개입을 해야만 한다고 본다. 환경오염피해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환경오염배상책임을 위한 법제마련은 입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기금의 형성 및 공제제도나 보험제도의 도입 등 배상책임이행의 수단에 관한 다양한 제도적 개선에 관한 법적 제언이 환경책임법제의 도입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 &lt;참고문헌&gt;

- 고승희 2001 “기업의 환경책임과 환경비용에 대한 회계적 접근” 「기업윤리연구」3권: pp.165-182
- 김세규 2005 “환경위험책임에 관한 연구” 「한국비교공법학회」6(2) pp.313-334
- 김춘환 2005 “보험을 이용한 환경규제” 「환경법연구」27(2) pp.113-139
- 김홍균 2001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책임체계의 정비방안”
- 류승훈 2001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의 실용화를 위한 일 고찰” 「손해보험」394(2001.9) pp.19-33
- 박군성 2000 환경피해의 공법적 구제” 「행정법연구」6(2000.하반기): pp.49-65
- 설계경 2006 “環境侵害의 權利救濟에 관한 考察” 「환경법연구」28(1) pp.491-519
- 안경희 2006 “환경침해(環境侵害)에 대한 민사법적(民私法的) 구제(救濟)” 「환경법연구」28(3) pp.3-58
- 양천수 2007 “전문법의 책임으로서 환경책임과 환경민사책임” 「환경법연구」29(3)
- 윤수진 2009 “국가의 환경책임과 배상책임에 대한 연구” 「법학논총」33(1) pp.305-330
- 이기형 2008 「환경오염리스크관리를 위한 보험제도 활용방안」 보험연구원
- 이승우 2006 “환경위험책임의 귀책구조” 「환경법연구」28(3) pp.265-290
- 전경운 2003 “환경책임법 제정의 필요성과 그 내용” 「환경법연구」25(2003.9) pp.27-79
- 정 훈 2007 “환경관련 행위에 대한 공법적 책임” 「환경법연구」29(3) pp.63-93
- 전경운 2007 “환경책임법상 공법 및 환경기준의 법적 의미” 「환경법연구」29(3) pp.27-63
- 조만형 2005 “환경오염 피해구제제도로서의 손해배상책임과 보험” 「환경법연구」27(2)
- 채영근 2010 “기업의 환경책임에 관한 법적 고찰” 「환경법연구」32(1)
- 최명구 2008 “독일 환경책임법의 제정시 환경책임의 주요논쟁과 시사점” 「환경법연구」

30(1) pp.331-367

하태웅 2000 「환경오염과 보험법」 서울: 휘즈프레스

한상운 2009 「환경책임과 환경피해보험제도의 제도화 방안에 관한 기초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Amanda C. Leiter, Environmental Insurance: Does it Defy the Rules?, 25 Harv.  
Envtl L. Rev, 259, at 318-321(2001).

Anhang II der Richtlinie 2004/35/EG.

Centerior Serv. Co. v. Acme Scrap Iron & Metal Corp., 153 F.3d 344, 348 (6th  
Cir.1998)

DIRECTIVE 2004/35/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1 April 2004 on environmental liability with regard to the  
prevention and remedying of environmental damage.

Gesetz über die Vermeidung und Sanierung von Umweltschäden

(Umweltschadensgesetz - USchadG) vom 10. Mai 2007 (BGBl. I S. 666).

Richtlinie 2004/35/EG des Europäischen Parlaments und des Rates vom 21. April  
2004 über Umwelthaftung zur Vermeidung und Sanierung von  
Umweltschäden (Abl. 2004, L 143, S. 56)

Robert V. Percival, Alan S. Miller, Christopher H. Schoreoder & James P Leape,  
ENVIRONMENTAL REGULATION: LAW, SCIENCE AND POLICY, at  
p.136(2000).

Salje / Peter, Umwelthaftungsrecht, 2005, §§ 1, 3 Rn. 139 ff. Danach sind bis  
zum Jahr 2005 lediglich vier obergerichtliche Entscheidungen zum UmweltHG  
ergangen.

Staudinger/Kohler, Einl 353 zum UmweltHR. Vgl. Kloepfer, Umweltrecht, 2004, §  
6 Rn. 65.

<Abstract>

## The possibility of the Introduction of the Liability law in Korea

Han Sang-Woon\*

This paper was studied about the possibility of the introduction of the environmental liability law in Korea. In the world, the problem of environment is recognized as the most serious problem by our human beings, with the increase of population and the drain of resources. It is difficult to confirm. So there should be the introduction of environmental impairment liability law. This paper dealt with the environmental liability law and its components and functions, nature of liability, [cause-and-effect relationship](#), etc. Also the environmental liability is required to prepare the environmental insurance, to prevent the environmental pollution problem in advance, and to restore and compensate the possible damage from pollution. We should take notice of being possible of environment management through insurance.

Key-word : environmental pollution, environmental impairment liability,  
cause-and-effect relationship, environmental impairment liability  
insurance, environment management.

주제어 : 환경오염, 환경배상책임, 환경책임법, 인과관계, 환경보험, 환경관리

---

\* KEI, Associate research fellow